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18호

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(EMS)의 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2년 3월 29일

**우 정 사 업 본 부 장**

# 국제특급우편(EMS) 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

## 1. 계약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

**가. 대 상 :**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(EMS)을 발송하는 이용자

**나.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**

(금액단위 : 1개월, 만원)

| 이용금액별 | 50초과 ~150 | 150초과 ~500 | 500초과 ~1,000 | 1,000초과 ~2,000 | 2,000초과 ~3,000 | 3,000초과 ~5,000 | 5,000초과 ~7,000 | 7000초과 ~10,000 | 10,000초과 ~12,000 | 12,000초과 ~15,000 | 15,000초과 ~70,000 | 70,000초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감액률 | 5% | 7% | 9% | 11% | 13% | 15% | 17% | 19% | 21% | 23% | 25% | 28% |

※ 단, 25%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의 승인 후 적용하며, 특별감액을 포함한 총 감액률은 28%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

※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(EMS 프리미엄은 요금표) 기준이며, 수수료는 제외한다.

## 2. 수시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

**가. 대 상 :**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1회에 이용금액 20만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(EMS)을 발송하는 이용자

**나.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**

(금액단위 : 만원)

| 이용금액별 | 20초과~50 | 50초과 |
|---|---|---|
| 감액률 | 3% | 계약국제특급우편 감액률을 준용 |

※ 단,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(EMS 프리미엄은 요금표) 기준이며, 수수료는 제외한다.

## 3. 특별감액

| 구 분 | 감 액 요 건 | 감액률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e-Shipping | - e-Shipping(인터넷 접수시스템)을 통해 접수 | 2% | 고시요금 기준 |

※ 기본 감액에 추가 적용하되, 총 감액률은 28%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8-53호(2008.12.12.)는 폐지한다.

2. (기존 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기존의 계약국제특급우편 이용자는 연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당월의 말일까지 이전 고시 제2008-53호(2008.12.12.)에 따른다.